

For 2022 피램의 기출마무리 LEET선별 5주차 해설지

5주차 [1~3]

2019LEET [15~17] 기술 '전자 현미경' ☆☆☆

첨단 소재 분야의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이 필요하다. 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다만 광학 현미경은 관찰의 매체로 가시광선을 사용하고 유리 렌즈로 빛을 집속하는 반면, 전자 현미경은 전자빔을 사용하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빔을 집속한다는 차이가 있다.

전자 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네요. 항상 그랬듯이 전자 현미경을 '화제'로 삼고, 기술의 목적을 이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독해를 시작해봅시다!

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원리가 같다는 문장이 등장했네요. '광학 현미경'이 등장하는 순간 '비교/대조'를 준비했어야 하고, 원리가 같다는 문장을 보고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광학 현미경은 '관찰의 매체'로 가시광선, 빛을 '집속'하는 거는 '유리 렌즈'로 하네요. 전자 현미경은 '관찰의 매체'로 '전자빔'을 사용하고, '집속'하는 거는 '자기장'을 이용하네요. '관찰 매체', '집속'을 기준으로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한편, '자기장'에 대해 '수식된 정의'로 설명되어 있네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발생'한다는 정보를 살짝 머릿속에 담고 갑시다 ㅎㅎ

하이라이트 문장

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비교/대조'가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항상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할지' 방향을 잡아가며 글을 독해하는 건 중요해요! 이 문장을 기점으로 '비교/대조'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광학 현미경은 시료에 가시광선을 비추고 시료의 각 점에서 산란된 빛을 렌즈로 집속하여 상(像)을 만드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세한 구조를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크기가 매우 작은 점광원에서 나온 빛은 렌즈를 통과하면서 회절 현상에 의해 광원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지는 원형의 간섭무늬를 형성하는데 이를 '에어리 원반'이라고 부른다. 만약 시료 위의 일정한 거리에 있는 두 점에서 출발한 빛이 렌즈를 통과할 경우 스크린 위에 두 개의 에어리 원반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 두 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두 에어리 원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원반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아지면 관찰자는 더 이상 두 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한계점에서 시료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해상도'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현미경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의 해상도는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 렌즈의 초점 거리에 비례하며 렌즈의 직경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사용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최소 해상도가 작아지며, 더 또렷한 상을 얻을 수 있다. 광학 현미경의 경우 파장이 가장 짧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더라도 그 해상도는 파장의 약 절반인 200nm보다 작아질 수가 없다. 반면 전자 현미경에 사용되는 전자빔의 전자도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파동 이중성'에 따라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이 파동을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한다. 물질파의 파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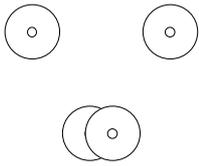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입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인 운동량에 반비례하는데 전자 현미경에서 가속 전압이 클수록 전자의 속도가 크고 수십 kV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대략 0.01nm 정도이다. 하지만 전자 현미경의 렌즈의 성능이 좋지 않아 해상도는 보통 수 nm이다.

광학 현미경의 '한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계는 '미세한 구조 관찰'이 힘들다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광학 현미경은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잘 한 겁니다 ㅎㅎ 어쨌든, 왜 문제가 생기는지 한 번 살펴봅시다.

'에어리 원반'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당황하거나,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광학 현미경의 한계'를 읽고 있어요. 에어리 원반은 '광원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지는 원형의 간섭무늬'입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다음 문장에 '만약'과 함께 '예시'가 등장하네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 예시를 통해 '에어리 원반'을 이해하면 됩니다. 항상 문장을 읽어 나갈 때 목표의식이 필요합니다.

예시를 한 번 이해해봅시다. '두 점'에서 출발한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 '에어리 원반'도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두 점' 즉, '두 광원'이 서로 가까워지면, '에어리 원반'도 가까워질 것이고, '두 에어리 원반의 중심 사이 거리'가 원반 크기에 비해 가까워지면 두 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광원이 '두 개구나!'하고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하는데, 에어리 원반이 겹치게 되어서 점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점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니 이해가 좀 쉽죠?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ㅎㅎ

이 때 두 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두 점 사이의 한계 거리를 '해상도'라고 한다네요. 최소의 해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파장', '렌즈의 초점 거리'에 비례하고, '렌즈 직경'에 반비례한다고 하네요. 이런 정보는 옆에 간단히 메모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통해 머릿속에 남길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 최소 해상도 ↓ - 파장 ↓
- 최소 해상도 ↓ - 렌즈의 초점 거리 ↓
- 최소 해상도 ↓ - 렌즈 직경 ↑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파장이 작아지면 '두 점이 구분되는 최소 거리'인 '최소 해상도' 역시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 해상도'가 작아지는 것이 '또렷한 상'을 얻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최소 해상도'의 정의를 통해 천천히 생각해보면 됩니다. '두 점이 구분되는 최소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무리 가까운 두 점이라도 구분이 되겠죠? 최소 거리가 커진다는 것은, 조금만 가까워져도 구분이 안 간다는 거니까요. 구분이 안 가면 미세한 구조 관찰이 안 되는 거구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우리는 지금 '에어리 원반'과 '해상도'를 왜 읽고 있을까요? 바로 '미세한 구조 관찰의 어려움'이라는 '광

학 현미경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읽고 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놓치면 안 돼요! 한편, 파장이 가장 짧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더라도 해상도는 파장의 절반인 200nm보다 작아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추가적인 정보니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드디어 '전자 현미경'에 대한 정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자빔'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시광선'이 떠올라야 합니다. '가시광선'과 같은 '관찰의 매체'이고,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해상도'와 개념이 동일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1문단을 읽으면서 '가시광선'과 '전자빔'이 같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전자빔'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서술을 봤을 때, '파장' - '최소 해상도'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등장한 개념, 정의를 정확히 잡고 뒤로 가면서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어쨌든 이러한 파동을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한다네요. 이 파장은 '질량과 속도의 곱 = 운동량'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아래처럼 간단히 기록해놔야겠네요.

$$\text{질량} \times \text{속도} = \text{운동량} \downarrow - \text{물질파의 파장} \uparrow$$

위 식에 따라서 전자가 가속되면 속도가 커질 거고, 속도가 커지면 운동량이 커지니, 파장은 작아지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최소 해상도'죠. 물질파의 파장이 작아지면 '최소 해상도' 역시 작아질 것이고, 그럼 '미세한 구조 관찰'이 가능하겠네요. 그 서술이 운동량에 대한 정의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0.01nm라고 하네요. 해상도는 수 nm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20nm였죠.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광학 현미경은 에어리 원반 때문에 '미세한 구조 관찰'이 어려웠습니다. 그게 한계였어요. 그런데 '전자 현미경'은 '전자'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상도가 더 작다는 것은 '미세한 구조 관찰'이 용이해졌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미세한 구조 관찰'이라는 카테고리 중심에 '파장'과 '최소 해상도'의 개념을 엮어가며 독해했다면 쉽게 정보 정리가 됐겠죠? 그 과정에 나오는 여러 '비례 관계'는 간단히 메모하며 읽으면 됐고요. 하나의 카테고리, 화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조직화하며 읽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광학 현미경은 시료에 가시광선을 비추고 시료의 각 점에서 산란된 빛을 렌즈로 집속하여 상(像)을 만드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세한 구조를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광학 현미경의 '문제점'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글을 잘 읽는 학생이라면, 이 문장을 읽고 '전자 현미경'은 '미세한 구조 관찰'이 가능하겠네? 광학 현미경은 왜 안 되는 거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이 문단을 독해해쳤고요.

전자 현미경의 렌즈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사용하여 전자의 이동 경로를 휘게 하여 전자를 모아 준다.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속도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데 그 방향은 자기장에 대해 수직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다. 전자 렌즈는 코일을 적절히 배치하여 특별한 형태의 자기장을 발생시켜 렌즈를 통과하는 전자가 렌즈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만든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키면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 전자가 받는 힘이 커져 전자빔이 더 많이 휘어지면서 초점 거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물렌즈의 초점 거리가 작아지면 현미경의 배율은 커진다. 따라서 광학 현미경에서는 배율을 바꿀 때 대물렌즈를 교체하지만 전자 현미경에서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배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렌즈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전자가 받는 힘을 적절히 조절하여 한 점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광학 현미경에 비해 초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이제 '렌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앞 문단에서 '관찰의 매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니, 이제 '렌즈'에 대해 설명하나 봅니다. 전자 현미경의 렌즈는 '자기장'을 사용하여 전자를 모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는 '전자빔'을 말하는 거겠죠? 이때 전자가 자기장을 통과하며 받는 힘은 '속도'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간단히 정리해 줍시다.

$$\begin{aligned} &\text{전자의 속도} \uparrow - \text{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 \uparrow \\ &\text{자기장의 세기} \uparrow - \text{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 \uparrow \end{aligned}$$

이 힘의 방향이 자기장에 대해 수직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직'이라는 사실이 문제에 디테일하게 구현하려면 우리가 구조를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서술되거나, '수직'이라는 요소가 지문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지만, 읽으면서 알 수 있다 싶으면 그렇지 않으니까요!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 계속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어쨌든 전자 렌즈는 코일을 '적절히(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죠?)' 배치하여 '전자'가 '렌즈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즉, '전자빔'을 '집속'한다는 거죠. 렌즈 중심으로 힘을 받는 것과 '전자빔 집속'이 같다는 것을 재진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일의 전류가 증가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힘도 커지므로 '초점 거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과 '초점 거리'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떠올려야 합니다. 뭘까요? 떠올려야 해요. 바로 '초점 거리'입니다. '최소 해상도'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봅시다.

$$\text{자기장의 세기} \uparrow - \text{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 \uparrow - \text{렌즈의 초점 거리} \downarrow - \text{최소 해상도} \downarrow \rightarrow \text{미세한 구조 관찰 가능}$$

또 하나의 정보가 나옵니다. '초점 거리'가 작아지면 '배율'이 커진다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 '광학 현미경'과 비교 지점이 등장합니다. '광학 현미경'은 렌즈 자체를 교체해서 배율을 조정하지만, '전자 현미경'은 '전류'를 조절하는 것이죠. '전류'의 크기가 달라지면, '힘'도 달라질 것이고, '힘'이 달라지면 '초점 거리'가 달라지므로, '배율'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비례/증감 관계를 위로 왔다갔다 하면서 연결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힘 조절이 쉽지 않아서 초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는데요. '광학 현미경'의 단점으로 간단히 체크해두면 되겠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키면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 전자가 받는 힘이 커져 전자빔이 더 많이 휘어지면서 초점 거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과 '최소 해상도'의 개념이 '초점 거리'라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광학 현미경'의 문제점이었던 '미세한 구조 관찰 어려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던 '최소 해상도'라는 개념을 읽어먹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초점거리? 최소 해상도랑 연결된 개념이지? 아! 그러면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과 최소 해상도가 연결된 비례/증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문제로 이어질 테니까요.

전자 현미경은 고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빔을 사용하므로 현미경의 내부는 기압이 대기압의 $1/10^{10}$ 이하인 진공 상태여야 한다. 전자는 공기와 충돌하면 에너지가 소실되거나 굴절되는 등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절연체 시료를 관찰할 때 전자빔의 전자가 시료에 축적되어 전자빔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통 절연체 시료의 표면을 금 또는 백금 등의 도체로 얇게 코팅하여 사용한다.

전자 현미경의 사용 조건이 나오네요. 현미경 내부의 기압이 아주 작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공' 상태여야 한다고네요. 2019학년도 09월 모의평가 'STM' 지문이 떠오르신 분은 기술 분석이 잘 된 거예요 ㅎㅎ 또한 절연체 시료의 표면을 도체로 얇게 코팅해야 한다고네요. 시료 표면에 전자가 쌓여 있으면 전자빔의 전자가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 부호를 띠고 있으니 당연하네요.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두 조건이 나왔다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진공' 상태와 '절연체 시료 표면을 도체로 코팅' 이렇게요.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납득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광학 현미경에서는 실제의 상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자 현미경에서는 시료에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를 검출기에 집속하여 상이 맺힌 지점에서 전자의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형태를 디지털 영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전자 현미경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한 검출기 및 주변 기기를 장착하여 전자 현미경의 응용 분야를 확장할 수 있다.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의 특성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광선인 '가시광선'을 쓰니까 실제 상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자 현미경은 전자의 분포를 통해 상을 관찰하므로, 실제처럼 보이지 않는 거네요. 의의가 나오면서 지문이 끝납니다. 이 문단을 통해서만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의 '관찰'에 있어서의 '차이점'만 정확히 짚어내면 되겠네요!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는 시료에 비추는 빛의 파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상도랑 파장은 비례하는데?
[해설] 해상도는 빛의 파장과 비례하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② 전자 현미경에서 진공 장치 내부의 기압이 높을수록 선명함을 얻을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진공이어야 되는데?
[해설] 전자 현미경의 내부는 대기압보다 훨씬 작은 '진공' 상태여야 합니다. 전자빔의 전자의 컨트롤이 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빔의 전자가 공기와 충돌해서 제어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제대로 된 관찰이 힘들겠죠? 따라서 진공 장치 내부의 기압이 낮아서 거의 '진공' 상태여야 됩니다.

③ 전자 현미경에서 렌즈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통과한 전자는 같은 점에 도달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자가 받는 힘을 적절히 조절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해설] 전자 현미경이 전자를 한 점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즉, '전자빔을 집속'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조절하여 '전자가 받는 힘'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그런데 전자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과 달리, 전자가 받는 힘을 적절히 조절하여 한 점에 모이게 하는 게 어려워서 초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선지의 정오는 충분히 판단 가능하겠네요. 조금 더 자세히 해설 해봅시다.

여기서 전자가 모이는 '한 점'은 '렌즈의 중심'입니다. 중심에 모이게 하기 위하여 렌즈의 중심쪽으로 힘을 받게 하는 것이죠. 선지에서는 '렌즈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통과한 전자가 '같은 점'에 도달한다고 묻고 있네요.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전자나, 가장자리를 지나는 전자나 모두 '중심 쪽'으로 힘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자리'를 지나는 전자는 중심 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중심을 지나는 전자는 가만히 있거나, 힘을 받아서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각 전자가 얼마만큼의 힘을 받아서 얼마나 움직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점'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전자 현미경의 단점'에 대해 묻는 선지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전자 현미경에서 시료의 표면에 축적되는 전자가 많을수록 상의 왜곡이 줄어든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왜곡이 안 생기게 하려고 표면을 도체로 코팅하는 거 아니었어?
[해설] 시료 표면에 전자가 축적되면 전자빔의 전자를 밀어냅니다. 둘 다 마이너스 부호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체로 코팅한다고 했었죠. 전자 현미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 두 번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⑤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은 모두 시료에서 산란된 파동을 관찰하여 상을 얻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두 현미경의 원리가 같다고 했고, '파장'을 관찰한다고 했으니까 맞겠네.

[해설] 이 선지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은 '산란된 파동'입니다. '산란된'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 경우에 저는 '광학 현미경'의 원리 앞 부분 혹은 '전자 현미경'의 원리 앞 부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두 현미경의 원리가 공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두 현미경 중 하나만 확인해도 되니까요.

실제로 광학 현미경은 '시료의 각 점에서 산란된 빛'을 집속하여 상을 만들고 관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란된 빛'은 선지의 '산란된 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자 현미경이 '파동'처럼 행동하는 전자빔의 전자를 '집속하여 상을 관찰하는 것을 생각하면, 광학 현미경에서 집속되는 '빛'은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시광선'의 '파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요. 가시광선이 '파동'이라는 사실 역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현미경의 원리가 같으므로 '산란된 파동'을 관찰한다는 부분만 깔끔하게 해결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네요.

2. 윗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의 특성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전자의 물질과 파장이 길수록 전자가 전자 렌즈를 지날 때 더 큰 힘을 받는다.
- ㄴ. 전자의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 상에서 에어리 원반의 크기를 더 작게 할 수 있다.
- ㄷ. 전자 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면 상의 해상도를 더 작게 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ㄱ, ㄴ ⑤ ㄱ, ㄴ, ㄷ

ㄱ. 전자의 물질과 파장이 길수록 전자가 전자 렌즈를 지날 때 더 큰 힘을 받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자의 파장이 길어지면 속도가 커지니까 힘도 커지겠네.

[해설] 간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선지입니다. 비례/증감 관계를 적절히 이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자의 파장이 길면 '운동량'이 커집니다. 운동량이 크다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 크다는 것인데, 전자의 '질량' 자체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속도'가 커질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속도'가 커지면 그에 비례하는 힘을 받으므로, 전자 렌즈를 지날 때 더 큰 힘을 받을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네요!

ㄴ. 전자의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 상에서 에어리 원반의 크기를 더 작게 할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말 어려운 선지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설] 전자의 가속 전압과 에어리 원반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가속 전압이 커지면, 전자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전자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자가 받는 '힘'이 커진다는 것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고, '힘'이 커지면 초점 거리가 줄어듭니다. 초점 거리가 줄어들면 '최소 해상도'가 작아지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속 전압'이 증가했을 때, '최소 해상도'가 작아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어리 원반의 크기'까지 정보를 엮어야 합니다. '최소 해상도'가 작아진다는 것은 '두 점으로 인식 가능한 거리'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점으로 인식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원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원반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아지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점으로 인식 가능한 거리인 '해상도'가 작아진다는 것은, '원반의 크기'에 비해 원반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크다는 것이고, 이는 '거리'가 작아져도 되지만, '원반의 크기' 자체가 작아져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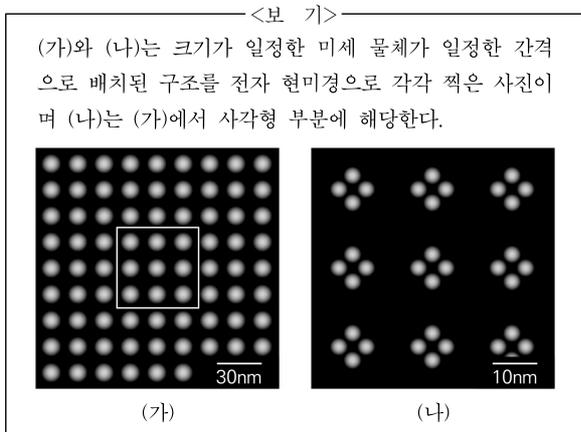
'원반의 크기'에 비해서 거리가 작기만 하면 되니까, '원반의 크기 자체가 작아지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기존보다 더 작아져도 원반의 크기에 '비해서'는' 작은 게 되니까요. 원반의 크기와 두 점 사이의 거리 간의 비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반의 크기가 작아지면 거리가 작아져도 둘 사이의 비율은 같으니까요. 따라서 가속 전압이 커지면 '에어리 원반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추론입니다.

ㄷ. 전자 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면 상의 해상도를 더 작게 할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류가 감소하면 힘이 줄어들지? 힘이 줄어들면 초점 거리가 커지니까 해상도도 커지겠네.

[해설] '전류의 크기'와 '해상도' 사이의 관계를 천천히 따지면 됩니다. 두 개념을 이어주는 개념은 '초점 거리'이다. '전류의 크기'가 줄어들면, '힘'도 작아지고, '힘'이 작아지면 초점 거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최소 해상도'와 '초점 거리'는 비례하므로 해상도도 작아지겠네요.

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해상도는 30 nm보다 크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림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5보다 작는데?

[해설] 해상도의 정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해상도는 '구분 가능한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가)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0nm보다 작습니다.

② (가)에서 전자 현미경 내부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크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자 현미경 내부 기압은 진공이어야 하는데?

[해설] 지문에 의하면 대기압보다 작은 상태가 '진공'입니다. (가)가 정상적으로 미세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 현미경이 잘 작동하고 있고, 이는 전자 현미경 내부 기압이 진공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 현미경 내부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작겠네요.

③ (나)에서 사용된 전자의 물질과 파장은 20 nm보다 크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의 해상도가 수nm네? 이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0.01nm니까 20nm보다 클 수가 없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굳이 선지에 20nm를 물어본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현재 (나)에 제시된 선의 길이가 10nm입니다. 그런데 '광학 현미경' 부분을 보면, 해상도는 파장의 절반보다 작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광학'과 '전자'는 다르긴 하지만요. 우리는 지금 20nm가 선지에 등장한 이유를 읽고 있으니까 살짝 무시해주도록 합시다. 어쨌든 해상도는 파장의 절반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나)의 해상도는 10nm보다 작습니다. 즉, 파장은 20nm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해상도가 10nm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20nm를 선지에 제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의 원리가 같으니 이렇게 푸는 게 '완벽하게 틀렸다'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전자 현미경'에 대한 정보로 선지를 푸는 것이 더 필연적이므로,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같이 풀면 됩니다. 다만, 20nm가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 생각하다 보면 위와 같이 또 다른 논리적인 풀이를 생각해볼 수 있으므로 '사고력 상승'을 위해 천천히 복습해보세요!

④ (나)에서 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가)의 경우보다 크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류가 크면 해상도가 작아지지.. (나)의 해상도가 더 작으니까 적절하네!

[해설] 전류가 크면 전자가 받는 힘이 커지고, 힘이 커지면 초점 거리가 작아지므로 해상도 역시 작아집니다. 현재 해상도는 (나)가 작으므로 적절한 선지네요!

⑤ (나)에서 사용된 전자의 속력은 (가)에서 사용된 전자의 속력보다 3배 작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속력이 작으면 해상도는 크지... (나)가 해상도가 더 작는데?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속력이 작으면 전자가 받는 힘이 작고, 힘이 작으면 초점 거리가 커지고, 초점 거리가 커지면 해상도 역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3배'라고 쓰인 이유만 생각해봅시다. (가)와 (나)에 쓰인 nm가 각각 30, 10이기 때문이겠죠?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기술 지문에서는 반복되는 정의가 나올 때 앞 부분에 제시된 개념의 정의를 활용해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의를 활용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문장이 정보로만 남게 됩니다.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비교/대조 : 차이점은 반드시 '공통점'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차이점'을 인식하는 건 당연하죠?

⑤ 비례/증감 : 납득하기 힘든 비례/증감 관계가 많이 등장하면 지문 옆에 간단히 적어두는 방식으로 정보량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통해 기억할 수 있는 정보면 납득을 통해 정보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5주차 [4~6]

2015LEET [4~6] 사회(경제) '차선의 문제' ☆☆☆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 즉 '파레토 최적' 상태를 달성하려면 모든 최적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파레토 최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n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어떤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n-1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상황이 n-2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립시와 랭커스터는 이러한 통념이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님을 보였다. <즉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더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최적 조건의 일부는 충족되지만 나머지는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경제 전체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현재 충족되고 있는 일부의 최적 조건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왜곡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왜곡이 초래되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최적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최적 조건의 일부가 항상 충족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차선(次善)의 문제**라고 부른다.

파레토 최적이라는 키워드로 지문이 시작됩니다. 파레토 최적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파레토 최적의 핵심이에요. 이때,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파레토 최적 달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율성도 조건을 충족함과 비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한 건 똑같은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립시와 랭커스터입니다. 두 학자의 입장을 재진술까지 하고 있으니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파레토 최적과 연결해서 납득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현실에서는 파레토 최적 달성되기가 어려워서 '일부의 최적 조건'을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화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네요. 슬슬 감이 잡히시나요? 파레토 최적과 관련된 문제 상황이 화제입니다. 어차피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미충족된 조건을 시정할 때 기존에 만족했던 조건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흐름이라고 해요. 즉, 다른 조건을 추가로 만족시키고자 할 때 경제적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10개라면, 9개를 만족하는 것이 8개, 7개를 만족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다보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러나 저러나 파레토 최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나마 차선책으로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차선의 문제'라고 해요. 추가로 조건의 달성률과 경제적 효율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배경에 있습니다. 만약 조건의 달성률이 경제적 효율성에 비례한다면, 차선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조건을 최대한 많이 충족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왜곡을 시정할 때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선의 문제를 앞에서 떠올린 화제와 연결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선의 문제가, 파레토 최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해요. 파레토 최적은 달성될 수 없는 상태이니, 그나마 나은 최적의 조건, 즉 '차선'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문단이 꽤 길지만, 화제가 명확하고 지문의 흐름이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재진술 문장도 많아서 더 친절하게 느껴지고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새끼 문제 해설

Q1. '차선의 문제'를 파레토 최적과 연결해서 이해해보자.

지문 해설에서도 언급했지만, '차선의 문제'는 파레토 최적 달성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레토 최적 달성되지 않는 한, 조건의 충족률과 경제적 효율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 '차선'의 상황은 무엇인지를 따지는 거죠.

하이라이트 문장

이 경우 경제 전체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현재 충족되고 있는 일부의 최적 조건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화제를 처음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읽으면서, 파레토 최적과 연결지를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에 '차선의 문제'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차선의 문제는 경제학 여러 분야의 논의에서 등장한다. **관세동맹 논의**는 차선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동맹**이란 동맹국 사이에 모든 관세를 폐지하고 비동맹국의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국가에서 관세가 제거된 **자유무역을 최적의 상황**으로 보았고, 일부 국가들끼리 **관세동맹을 맺을** 경우는 관세동맹을 맺기 이전에 비해 **자유무역을 상 황에 근접하는 것**이므로, 관세동맹은 항상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바이너**는 관세동맹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관세동맹의 효과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동맹국 사이에 **새롭게 교역이 창출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비동맹국들과의 교역이 동맹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창출**은 상품의 공급원을 생산비용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이 증대**되지만, **무역전환**은 공급원을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비용이 높은 국가로 바꾸는 것이므로 **효율이 감소**한다. 관세동맹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의 여부는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가에 달려 있다. 무역전환 효과가 더 크다면 일부 국가들 사이의 **관세동맹은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화제와 관련된 '관세동맹 논의'가 제시됩니다. 카테고리 잡고 넘어갑니다. 화제가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관세동맹의 정의도 설명하네요. 말 그대로 동맹국끼리는 '관세'를 폐지하는 겁니다. 자유 무역 협정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유무역을 주장

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가에서 관세가 폐지된 걸 최적으로 보고 일부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는 건 최적인 조건 중 일부가 충족된 것이니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한다고 생각한대요. 즉, 모든 국가가 자유 무역을 하는 게 '파레토 최적'의 상태이고, 일부 국가가 자유 무역을 하는 것은 파레토 최적에 가까운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는 순간 바로 앞에서 본 립시와 랭커스터의 입장을 떠올려셔야 합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립시와 랭커스터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립시와 랭커스터는 조건의 충족률과 경제적 효율성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우리는 이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차선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니 자유 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다보니 '바이너'라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딱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조건의 충족률과 경제적 효율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기에 문이겠죠? 이 포인트를 살리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관세동맹의 효과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으로 나누는데, 무역/창출은 동맹국 사이에 '무역'이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고 무역/전환은 비동맹국과의 무역(교역)이 동맹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역창출은 경제적 효율을 증대하는데, 무역전환은 효율이 감소한다고 해요. 생산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생산비용에 따라 효율이 증대되고 감소하는 것 자체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건 '무역전환'이에요. 무역전환에서 효율이 감소한다고 하니, 단순히 관세동맹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만 관세동맹을 했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려면, '무역창출 효과 > 무역전환 효과'여야 한 대요. 당연히 무역창출은 효율을 증대시키고 무역전환은 효율을 감소시키니 그렇겠죠?

새끼 문제 해설

Q2.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하는가?

모범 답안 : 화제와 어긋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과 조건 충족률은 비례하지 않는데,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례하는 것처럼 보기 때문이다.

지문 해설에서 이미 다 했던 얘기입니다. 모든 국가가 동맹을 맺은 것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볼 때, 일부 국가의 동맹은 조건을 일부만 충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건의 일부만 충족해도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하니, 차선의 문제가 도출되던 배경과 어긋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그러나 바이너는 관세동맹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문단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이들의 주장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읽다가 '바이너'의 주장이 차선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해요.

차선의 문제는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와 상품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오랜 논쟁에서도 등장한다. 경제학에서는 **세금이 시장의 교란을 야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파레토 최적** 상태이지만, 세금 부과는 불가피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상품에 **간접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그 상품과 다른 상품들 사이의 **상대적 가격에 왜곡이 발생**하므로, 이 **상대적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접세**가 더 나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헨더슨**과 같은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직접세가 노동 시간과 여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리틀**은 주장하였다. <한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는 그 상품과 다른 상품들 사이의 파레토 최적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게 되지만, 직접세는 여가와 다른 상품들 사이의 파레토 최적 조건의 달성을 방해하게 되므로, 직접세가 더 효율적인지 간접세가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리틀은 여러 상품에 차등적 세율을 부과할 경우, 직접세만 부과하는 경우나 한 상품에만 간접세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지만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콜레트와 헤이그**는 직접세를 동일한 액수의 간접세로 대체하면서도 개인들의 **노동 시간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여가와 보완관계가 높은 상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레저 용품처럼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그 상품의 소비를 억제**시킴으로써 여가의 소비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잡고 들어가야겠죠? 물론 이때도 '차선의 문제'라는 화제는 꼭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원래는 세금이 아예 없는 게 파레토 최적 상태라고 해요. 세금이 없어야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시나 현실적으로 세금을 안 매길 수는 없으니 차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헨더슨'은 이때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낫다고 주장합니다. 직접세는 다른 상품들 사이의 상대적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세는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근거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금으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건 '왜곡'입니다.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왜곡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왜곡이 덜한 직접세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게 헨더슨의 핵심이에요. 간접세는 '상대적 가격'에 대해 추가적인 왜곡을 유발하니깐요.

그런데 리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직접세가 노동시간과 여가에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만 헨더슨의 주장이 맞다고 해요. 그럼 직접세도 다른 측면에서 왜곡을 발생시키나봅니다. 그걸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네요. 재진술 문장 읽듯이 자연스럽게 읽으셔야 합니다. 간접세든 직접세든 모두 왜곡을 일으키니 정확히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차선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네요. 뭐가 차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화제 떠올리면서 읽어야 해요! 나만의 차선책으로 '차등적 세율'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계속 '차선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읽어봅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콜레트와 헤이그입니다. 애네는 직접세를 '간접세'로 대체하면서 노동 시간과 소득을 늘리는 조건을 찾았대요. 소득이 늘어나는 건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콜레트와 헤이그의 주장이 '차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

다. 그 방법은 여가와와 관련성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매기는 것입니다. 보완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이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레저 용품'은 여가와 관련이 있는 상품이니까요. 이런 보완관계의 상품에 높은 세율을 매기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 상품을 덜 소비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가 시간도 줄어들 테니 노동 시간은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서핑을 여가로 한다고 했을 때, 서핑 용품에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기면 서핑을 못 즐기게 되니 여가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럼 늘어난 노동 시간만큼 소득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효율성이 증대되었네요.

결과적으로 직접세를 '간접세로 대체'하면서 여가와와 관련성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매기는 것이, 차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경제학에서는 세금이 시장의 교란을 야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파레토 최적 상태이지만, 세금 부과는 불가피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차선의 문제를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카테고리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문단의 카테고리를 잡고 화제이자 핵심 개념인 '차선의 문제'를 떠올리면서 문단을 읽어야 합니다.

콜레트와 헤이그는 직접세를 동일한 액수의 간접세로 대체하면서도 개인들의 노동 시간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찾아냈다.

콜레트와 헤이그가 찾아낸 '조건'이 '차선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화제 중심 읽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차선(次善)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 화제 그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레토 최적과 연결해서 이해했던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파레토 최적의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면, 그 조건의 충족률과 경제적 효율성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립스와 랭커스터의 주장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무역동맹과 세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 ① 파레토 최적 조건들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을 때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차선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이게 핵심이었는데?
[해설] 네, 차선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했던 포인트 그 자체입니다. 현실적으로 파레토 최적은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적 조건이 모두 달성되지 못했을 때는 조건의 충족률과 경제적 효율성은 비례하지 않았죠. 그래서 '차선'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 ② 전체 파레토 조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의 상황을 찾으려면 나머지 조건들의 재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계속 왜곡이 발생한다고 했어.
[해설] 실전 판단 과정과 같습니다.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

상향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있을 때 어떤 왜곡을 시정할 때 다른 부분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 ③ 주어진 전체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최적 상태를 달성했던 부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기도 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왜곡이 발생하니까!
[해설] 계속 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기존의 최적 상태'가 파레토 최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최적 상태' 즉, '차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차선의 문제를 논의할 때도 현실에서 파레토 최적 달성되기 어려우니, 달성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파레토 최적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왜곡은 있고 그 왜곡을 수정할 때는 또 다른 부분에서 왜곡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경제적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차선의 문제의 핵심이기도 했고요.

- ④ 차선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여러 경제부문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어떤 부분을 수정할 때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겠지.
[해설] 이것도 실전 판단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의 왜곡을 시정할 때 새로운 왜곡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선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됐죠.

- ⑤ 경제개혁을 추진할 때 비합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제거될수록 이에 비례하여 경제의 효율성도 제고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중요한 건 조건 아닌가?
[해설]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이 '제거'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조건이 일부 '달성'되었을 때, 그중 어떤 것이 최적인지 그 차선을 고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지문에서 명시하지도 않았습니. 사실 중요한 건 '조건이 일부 달성되었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언제 가장 극대화되는지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5. A, B, C 세 국가만 있는 세계에서 A국과 B국 사이에 관세동맹이 체결되었다고 할 때, ㉔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례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은? ㉔

㉔ 바이너

- 바이너는 '무역전환 효과 > 무역창출 효과'라면 무역동맹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 ① 관세동맹 이전 A, B국은 X재를 생산하지 않고 C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관세동맹 이후에도 A, B국은 X재를 C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수입을 그대로 C국에서 하고 있으니 무역전환이 없네.
[해설] 네, 무역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효율성을 떨어트릴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럼 ㉔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부적절하네요.

② 관세동맹 이전 B국은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A국은 최저비용 생산국인 C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관세동맹 이후 A국은 B국에서 X재를 수입하게 되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관세동맹 이후 C국과의 무역이 A-B국 간의 무역으로 바뀌었으니 무역 전환이 일어났네. 그런데 C국이 최저비용 생산 국가였으니 무역전환으로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했겠구나.

[해설] 실전 판단 과정과 같습니다. '무역전환'이 발생했는데, 그 무역전환이 생산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셨다면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③ 관세동맹 이전 A, B국은 모두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C국에 비해 생산비가 높았다. 관세동맹 이후 A국은 생산을 중단하고 B국에서 X재를 수입하게 되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B국 사이에 무역창출이 발생했네. 중요한 건 무역전환이네.

[해설] 바이너는 '무역전환 효과 > 무역창출 효과'일 때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역창출만 있고 무역전환은 없으니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거예요.

④ 관세동맹 이전 B국이 세 국가 중 최저비용으로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A국은 X재를 B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관세동맹 이후에도 A국은 B국에서 X재를 수입하고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역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네.

[해설] 네, 관세동맹 이후 그대로 무역이 유지되고 있으니 무역전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성이 줄어들 건덕지가 없겠습니니다. 그렇다고 무역창출이 발생한 것도 아니네요. A-B국끼리 동맹 전에 하던 무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맹 전후의 효율성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니다. 아무튼 핵심은 '무역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⑤ 관세동맹 이전 A, B국 모두 X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A국이 세 국가 중 최저비용으로 X재를 생산하는 국가이다. 관세동맹 이후 B국은 생산을 중단하고 A국에서 X재를 수입하게 되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역창출이 발생했으니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는 사례이네.

[해설] 동맹 전에는 A, B국이 전부 X재를 생산했는데, 동맹 후에는 B국이 생산을 중단하고 A국과의 새로운 무역이 생겼습니니다. 즉, 무역창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전환은 따로 일어나지 않았으니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는 사례일 거예요.

6. <보기>의 상황에 대한 ㉠~㉥의 대응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핸더슨, ㉡ 리틀, ㉢ 콜레트와 헤이그

- 세 학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카테고리에서 나왔습니니다. 차선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세금이 더 적합한지를 얘기했죠? 그 중에서 콜레트와 헤이그가 나름대로 차선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선지 보러 갑시다.

<보 기>

일반 상품을 X와 Y, 여가를 L이라고 하고, 두 항목 사이에 파레토 최적 조건이 성립한 경우를 '⇔',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라는 기호로 표시하기로 하자.

가	나	다	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	X에만 간접세가 부과된 상황	직접세가 부과된 상황	X, Y에 차등 세율의 간접세가 부과된 상황
X ⇔ Y	X ↯ Y	X ⇔ Y	X ⇔ Y
X ⇔ L	X ↯ L	X ↯ L	X ↯ L
Y ⇔ L	Y ⇔ L	Y ↯ L	Y ↯ L

-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은 모든 조건이 달성된 '파레토 최적' 상황이고 나머지는 전부 차선의 상황입니다. 그럼 각 학자들이 어떤 상황을 선호할지에 대해 선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되겠네요.

① ㉠은 직접세가 여가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핸더슨은 직접세를 선호했으니 ㉡가 낫다고 생각하겠지.

[해설] 실전 판단 과정과 같습니다. 핸더슨은 상대적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접세가 더 나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간접세가 부과되는 ㉣보다 직접세가 부과되는 ㉡를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겠어요.

② ㉡는 ㉢과 ㉣의 효율성 차이를 보임으로써 립시와 랭커스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리틀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해설] 네, 리틀은 직접세와 간접세 중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설명할 수 없다고만 했어요. 애초에 세금이 없는 파레토 최적 상황은 당연히 세금이 있을 때보다 효율성이 높고 립시와 랭커스터는 파레토 최적에 달성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선의 문제'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예요. 즉, ㉡와 ㉢사이의 효율성 차이를 보이지도 않았고, 그걸 바탕으로 립시와 랭커스터의 주장을 뒷받침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여러모로 틀린 선지네요.

③ ㉠은 ㉡와 ㉣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을 비판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리틀의 핵심이네.

[해설] 네, ㉡번 선지를 판단하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리틀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효율성 차이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직접세가 낫다고 주장하는 핸더슨을 비판하기도 했죠.

④ ㉢은 ㉡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립시와 랭커스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직접세를 간접세로 바꾸고 여가량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에 높은 세율을 매기자고 했지?

[해설] 콜레트와 헤이그는 직접세를 간접세로 대체하고 여가와 관련된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매김으로써, 차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지문 해설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콜레트와 헤이그

를 일종의 해결 방안으로 읽었다면 쉽게 고를 수 있는 선지입니다.

- ⑤ ㉠은 ㉡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를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효율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④번 선지랑 같은 포인트를 물어보네.
[해설] 네, 직접세를 간접세로 대체하고, 여가와외의 관련성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했습니다.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에는 높게,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에는 낮게 부과했죠? 그렇게 하면 노동 시간과 소득이 늘어나니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5주차 [7~9]

2022LEET [15~17] 인문 '회사체제에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

☆☆☆☆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에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는 개념은 전문 경영인 체제의 확립을 가리키지만 그로 인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주식 소유의 분산으로 인해 창업자 가족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져 경영자들이 회사 이윤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인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 별리가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의미는 달랐다. 그는 '회사체제'라는 현대 사회의 재산권적 특징을 포착하고자 이 개념을 고안했다. 그에게 있어서 '소유', '지배', '경영'은 각각 (1) 사업체에 대한 이익을 갖는 기능, (2) 사업체에 대한 권력을 갖는 기능, (3) 사업체에 대한 행위를 하는 기능을 지칭하는 개념이지 각 기능의 담당 주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서 독해하면 되겠네요.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전문 경영인 체제' 때문에 '주주'와 '경영자'의 갈등을 의미하네요. '다시 말해'와 함께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소유'와 '지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어봅시다. 주식 '소유'는 '소유자'가 하겠죠? 소유자가 주식을 소유하는데, 소유의 분산으로 인해 '창업자 가족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창업자 가족'과 '대주주'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들의 힘이 약해져서 '경영자'들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서는 대체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정확히 뭘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충 '경영자랑 주식 소유자랑 싸우나 보네..' 정도는 가능한데, '지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잡기가 힘든 거죠. 읽어가면서 알아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독해해봅시다.

'별리'가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의미가 달랐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를 떠올려야 해요. 오늘날의 견해와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대조'해줘야겠죠? 별리는 이 개념을 '회사체제'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고안했다고 합니다. '회사체제'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함을 인지하시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던 '소유'와 '지배'와 '경영'에 각각 개념이 부여됩니다. '이익', '권력', '행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개념들은 '개념'일 뿐이지 '담당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에서는 주주가 '소유'를 하고, 경영자가 '경영'을 한다는 듯한 뉘앙스였는데, 별리는 그게 아니라 단순히 '개념'으로만 봐야 한다고 하는 것 같네요. '회사체제에서의 소유와 지배의 분리' 정도를 화제로 갖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그러나 ㉠ 별리가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의미는 달랐다. 그는 '회사체제'라는 현대 사회의 재산권적 특징을 포착하고자 이 개념을 고안했다.

화제가 등장하는 문장이죠? '회사체제에서의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는

화제를 강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하겠네요. 처음에 '벌리'가 생각했던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어떤 개념인지 궁금해하면서 독해했어야 됩니다.

벌리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세 기능이 통합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19세기에 많은 사업체들에서 소유자가 (1)과 (2)를 수행하고 고용된 경영자들이 (3)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일어났다. 20세기 회사체제에서는 많은 사업체들에서 (2)가 (1)에서 분리되었다. 이제 (1)은 사업체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표인 주식을 소유하는 것, 즉 비활동적 재산의 점유가 되었고, (2)는 물적 자산과 사람들로 조직된 살아 움직이는 사업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 즉 활동적 재산의 점유가 되었다. 주식 소유가 다수에게 분산된 회사에서 (2)는 창업자나 그 후손, 대주주, 경영자, 혹은 모회사나 지주회사의 지배자 등 이사를 선출할 힘을 가진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사기업에서는 통합되어 있던 위험 부담 기능과 회사 지배 기능이 분리되어 주주와 지배자에게 각각 배치됨으로써 회사라는 생산 도구는 전통적인 사유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벌리는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현대 회사를 준공공회사라고 불렀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소유'와 '지배'와 '경영'이 통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1)과 (2)를 했고, 경영자를 고용해서 (3)을 했으니까요. 즉, 모두 '소유자'가 한 것입니다. 세 기능의 '담당 주체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읽고 '회사체제에서는 각 기능의 담당 주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바로 앞 문단의 정보가 떠올라야 합니다.

역시 화제가 등장합니다. 20세기 '회사체제'에서는 (2)가 (1)에서 분리되었다고 하네요.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것입니다. <소유 = 주식 소유 = 비활동적 재산 점유>, <지배 = 사업체 사용 결정 = 활동적 재산 점유>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네요.

소유가 분산되면 '지배'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떠올라야 합니다. 각 기능의 담당 주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동시에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것입니다. 소유가 나뉘면서, 지배가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니까요. 원래는 소유자가 지배까지 했는데, 소유가 분산되면 지배도 분산되는 거죠.

이때, 소유자인 '주주'는 위험을 부담하고, '지배자'가 회사를 지배합니다. '소유'가 이익을 갖는 기능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손해도 감수해야 할 테니까요. 이렇게 '위험 부담'은 소유자가 하고, '지배'는 지배자가 하면 회사는 '사유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왜 사유재산이 아니게 될까요? 산업혁명 이전의 회사를 먼저 생각해보고 아래 해설을 읽어봅시다.

여기서 '사유재산'은 하면 산업혁명 이전의 회사를 말하는 거겠죠? 소유자가 회사라는 '사유재산'에 대해 사실상 (1), (2), (3)을 모두 했었으니까요. 회사는 사실상 소유자가 갖고 있던 사유재산인 겁니다. 오늘날은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었을뿐더러, 소유 역시 여러 명의 주주가 하고 있으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는 '준공공회사'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준 / 공공회사'인 것이죠.

하이라이트 문장

20세기 회사체제에서는 많은 사업체들에서 (2)가 (1)에서 분

상장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리되었다.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문장입니다. 화제를 다시 언급해주는 동시에, 산업혁명 이전의 '회사'와 회사체제에서의 '회사'를 비교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문장인 거죠.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는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 벌리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세 가지 답을 검토한다. 첫째, 재산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법학의 논리에 입각한다면 회사가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수행하는 소유자가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전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이익의 유일한 청구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새로운 화제가 등장합니다. '회사체제에서의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회사가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인 것이죠. 이에 대해 세 가지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법학의 논리'에 입각하여 설명합니다. 법학의 논리에 의하면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수반되는 논리는 '재산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다.'입니다.

주주가 재산권 즉,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이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이 권리를 위해 회사는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벌리의 반박이 나옵니다. 문장이 엄청 길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주주를 위해 회사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긴~ 문장을 읽고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독해력을 가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결론을 내면서 동시에 이 문장의 의미를 납득해야 합니다. 천천히 살펴봅시다. 이 문장에는 두 주어가 나오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수행하는 소유자'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 소유자'입니다. 각각 ①과 ②라고 해봅시다. ①의 경우는 '지배'를 수행하는 '소유자'입니다. 즉, '지배'와 '소유'를 둘 다 하는 것이죠.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회사체제 이전의 회사'가 말이죠. ②의 경우는 '지배'를 포기한 '소유자'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느낌표가 딱 떠올라야 합니다. '지배'를 포기한 '소유자'..? '아! 회사체제에서의 소유와 지배의 분리구나!'라는 것이죠. 다시 화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문장을 이해해봅시다. 벌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체제에서는 소유자가 회사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회사로부터 나옵니다. 소유자는 회사를 지배하지 않는데, 왜 회사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혼자' 가져가냐는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유일한 청구권자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일한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것은 '소유'의 '담당 주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담당 주체가 지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중요 정보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벌리'가 주장하는 화제와 다름이 없으니까 당연합니다.

결국 이렇게 법학의 논리는 반박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답을 한 번 살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그러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수행하는 소유자가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전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이익의 유일한 청구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문장을 얼마나 잘 독해했는지에 따라 '벌리'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정말 길기 때문에 자신의 독해력을 측정할 수 있기도 하고요!

둘째,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에 입각하면 회사는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전통적인 법학과 달리 재산권의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보호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재산의 보장 자체가 아니라 부를 얻으려는 노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기능 때문이라면, 회사가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지배자를 위해 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두 번째는 '경제학의 논리'입니다. 경제학 입장에서 회사는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회사는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계속해서 뭘 읽고 있는지 인지해야 해요.

어쨌든, 회사는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재산권'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재산권 보호의 효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산권을 보호하면 '부를 얻으려는 노력'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는 회사를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를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면 회사에 대한 '권력(2)'을 가진 '지배자'를 위해 회사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벌리'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합니다. '지배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험 부담 기능은 '소유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배자는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데, 지배자를 위해 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그러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지배자를 위해 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역시 '벌리'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벌리'는 '회사가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진지네요.

셋째, 이처럼 법학과 경제학의 전통적인 논리를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체제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서로 다른 그릇된 결론들이 도출된다는 것은 두 학문의 전통적인 논리들이 전제하고 있는 19세기의 자유방임 질서가 회사체제에 더 이상 타당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유방임 질서가 기초하고 있던 사회가 회사체제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서는, 회사가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최악의 대안이고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차악의 현실적인 대안일 뿐이다. 결국 회사체제에서 회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벌리의 결론이다.

세 번째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법학'과 '경제학'의 논리는 '전통적인' 논리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논리는 오늘날의 '회사체제'에 적용되기 어렵겠죠. 두 의견이 각각 '소유자'와 '지배자'를 위해 회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둘 다 그릇된 결론입니다. 전자는 '차악'의 대안이고, 후자는 '최악'의 대안이라는 '벌리'의 주장을 인지합시다.

그래서 결국 '벌리'가 내린 결론은 '회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다음 문단을 독해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결국 회사체제에서 회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벌리의 결론이다.

'회사는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화제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네요.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거나, 이를 실현할 합리적인 계획들을 공동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회사법 영역에서 경영자의 신인의무의 대상, 즉 회사를 자신에게 믿고 맡긴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는 의무의 대상을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 관계자들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벌리는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는 회사가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던 것으로 흔히 오해된다. 그러나 회사법에서 주주 이외에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가 주장한 이유는 주인이 여럿이면 경영자들이 누구도 섬기지 않게 되고 회사가 경제적 내전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경제력이 집중된 회사 지배자들의 사회적 권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법 영역에서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경영자뿐 아니라 지배자에게도 부과하여 지배에 의한 회사의 약탈로부터 비활동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회사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소득세법이나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환경법 등과 같은 회사법 바깥의 영역에서 공동체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 시킴으로써 사회의 이익에 비활동적 재산권이 자리를 양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문장부터 어렵습니다. 엄청 길어요. 하지만 천천히 독해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가면, 다음과 같이 정보가 인식되어야 합니다. 긴 문장을 처리하는 능력이 곧 독해력이니, 내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가 안 되었다면 아직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아주 간단해졌죠? 어떻게 이렇게 정리되는지 천천히 독해해봅시다.

'법적 근거 X', '합리적인 계획을 공동체가 받아들일 준비 X'를 전제합니

다. 아직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네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인의무의 대상'을 주주가 아닌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주주만 '신인의무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신인의무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문장 이해가 끝나겠네요.

'신인의무의 대상'은 '회사를 자신에게 믿고 맡긴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는 의무의 대상'입니다. 주주가 나에게 회사를 믿고 맡겼으니, 즉 '위험을 부담'하니, 주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은 주주의 것이기도 하고요.

어?? 근데 여기서 이상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주를 위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법학의 주장이었으니까요'. '벌리는 공동체를 위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 '벌리'의 해명이 나옵니다.

또 문장이 엄청 길어요. 하지만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주 이외의 이해 관계자가 신인의무의 대상이 되면 '회사 지배자들의 사회적 권력을 키워주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만' 회사 신인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해력이 좋은 학생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회사 지배자들의 사회적 권력을 키워주는 결과'가 어떤 말과 같은지 알고 있는 거죠. 회사가 무엇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이 떠오를 거예요. 회사는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즉, '사회적 권력'을 키워주면 '공동체를 위한 운영'이 되지 않으므로, 벌리는 회사가 주주를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어야 해 → 그래서 사회적 권력을 키우면 안 돼 → (지배자의 사회적 권력을 키우면 공동체를 위해 운영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 여러분의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재진술이니 복습하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뿐 아니라 '지배자' 역시 신인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비활동적 재산권'은 '주식'이죠? 결국 지배자든 경영자든 회사를 '소유자 = 주주'를 위해 운영해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회사법 바깥의 영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 문장 위까지는 모두 '회사법 영역'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민하게 문장을 독해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 '회사법 영역'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와요. 한번 세 보셔도 돼요 ㅎㅎ

회사법 바깥의 영역에서는 드디어 '공동체'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게 합니다. 여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거죠. 결국 회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네요. '사회의 이익 > 비활동적 재산권 = 공동체의 이익 > 주식'이라는 거니까요. 마지막 재진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지문이 끝납니다.

'벌리'가 생각하는 '소유와 지배의 분리', 그리고 이러한 회사체제에서 '회사는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두 화제에 대해 이해하는 게 이 지문의 목표였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이 때문에 그는 회사가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던 것으로 흔히 오해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벌리의 주장이 '주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기 전에 이상함을 먼저 느껴야 해요. '벌리'는 '공동체의 이익'을 주장했으니까요! 항상 화제를 잊지 맙시다.

7.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대한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는 전통적인 법학 논리에 입각한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학 논리는 주주, 교과서적 견해는 뭐지? 주주구나.
[해설]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와 '전통적인 법학 논리'의 상관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선지가 묻는 것이니까요. 우선 쉬운 거부터 합시다. '전통적인 법학 논리'는 회사가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는 어떨까요? 여기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는 개념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즉, '주주를 위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항상 선지가 묻는 것을 생각합시다.

- ② 벌리는 회사법에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경우 회사 지배자들의 권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 '경제학' 아닌가? 경제학은 지배자를 위한 운영을 주장하니까 적절하네.
[해설] 이 선지의 포인트는 '회사법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공동체의 이익'인데, '회사법 바깥의 영역'이 아니라 '회사법'에서는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니까요. '회사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운영되면 안 됩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학의 논리'입니다. '지배자를 위해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회사가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면 회사 지배자들의 권력이 커지겠조? 그건 문제점이고요.

- ③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통적인 경제학은 재산권 보장의 효과를 주장했지.
[해설] 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재산권 자체가 아니라,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유발되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 '지배자를 위한 회사 경영을 주장한 것이죠.

- ④ 벌리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 이유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의 신인의무 대상을 주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주가 유일한 청구권자가 아니긴 하지. 근데 경영자의 신인의무 대상은 주주인데?
[해설] '벌리'가 '전통적인 법학의 논리'에 대해 반박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의 주주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이유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진 맞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신인의무 대상을 주주로 한정하면 안 되는 거도 아니고, 애초에 '벌리'에 따르면 경영자의 신인의무 대상은 '주주'만 되어야 합니다.

- ⑤ 벌리와 달리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에 따르면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는 창업자 가족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져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해설] 창업자 가족이나 대주주는 '지배자'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약해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2. **[㉠]**에 대한 ㉠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준공공회사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기능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배가 수행되면 사회적 권력 상승인데?
[해설] '지배'가 수행되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벌리'에 따르면 '지배자'를 위한 회사 운영은 '최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사법 영역에서 주주만을 신인의무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을 경우 '지배자'의 권력이 커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네요. 어느 방향으로 살펴보면 '지배'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 ② 전통적인 의미의 사유재산에서는 소유자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소유자가 세 기능 모두 했지.
[해설] 소유자는 '소유', '지배', '경영' 모두 수행했습니다. '경영'은 '경영자'가 하긴 했지만, 경영자를 고용한 게 '소유자'이니까요.

- ③ 회사체제의 회사에서 이 기능의 담당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하지.
[해설] '회사체제의 회사'에서 지배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 기능은 '소유자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 ④ 회사체제의 회사에서는 활동적 재산을 점유한 자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활동적 재산은 지배자가 점유하는 거지.
[해설] 활동적 재산의 점유는 '지배자'가 점유합니다. 간단한 내용 일치 문제네요.

- ⑤ '경영'의 담당자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경영'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돌아가서 확인하니까 '경영자'가 수행할 수도 있네.
[해설]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배'라는 개념을 '경영자'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배'라는 개념은 담당 주체가 정해져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리'가 생각하는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서 설명한 개념 그 자체를 묻는 선지인 것이죠.

3. <보기>의 '뉴딜'에 대해 ㉠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금융개혁에 초점을 맞춘 1차 뉴딜은 경영자들과 지배자들에게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주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노사관계와 사회보장 등의 분야로 개혁을 확장했던 2차 뉴딜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들의 제반 권리를 합법화했고 실업수당의 보장 수준과 기간을 강화했으며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했다. 이러한 1차 뉴딜과 2차 뉴딜의 차이점 때문에 뉴딜은 흔히 체계적인 청사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마련된 일관성 없는 정책들의 연속이었다고 평가받는다.

1차 뉴딜은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했네요. '벌리'는 이에 대해 '회사법 영역'에서 적절한 개혁을 펼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차 뉴딜은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확보, '사회보장제도' 등을 확립했습니다. 즉, '공동체의 이익'을 확보한 것입니다. '벌리'는 이에 대해 '회사법 바깥'의 영역'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겠네요.

- ① 1차 뉴딜은 지배에 의해 회사가 약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회사법 영역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회사법 영역. 맞네.
[해설] '지배에 의한 약탈'을 막기 위해 신인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한정했는 것입니다. '경영자'나 '지배자'나 '주주'를 우선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죠.

- ② 1차 뉴딜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맞네.
[해설] <보기>에 대한 설명 그대로입니다.

- ③ 2차 뉴딜은 주주의 재산권이 사회의 이익에 자리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했으니까.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보기>에 대한 설명 그대로입니다.

- ④ 2차 뉴딜은 회사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회사법 바깥 영역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회사법 바깥 영역이 맞지.
[해설] 2차 뉴딜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 위한 정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는 '회사법 바깥' 영역에서 진행됐죠. '벌리'가 '회사법 영역'과 '회사법 바깥' 영역을 나누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는지를 인식했어야 합니다.

- ⑤ 1차 뉴딜과 2차 뉴딜은 준공공회사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 이미 준공공회사 아닌가?
[해설] 1차 뉴딜과 2차 뉴딜은 이미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준공공회사로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건 틀렸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이익'을 위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주장 인식 : 어떤 인물, 사상가, 집단이 나오면 그들의 주장에 주목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비교/대조 : 여러 가지 주장이 등장할 때는 독해와 동시에 비교/대조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를 묻는 선지가 나왔을 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5주차 [10~12]

2010LEET [16~18] 인문 '민주주의 실천' ☆☆☆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에 제정된 **중간집단 금지에 관한 법**들은 개인의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동업조합, 상인조합은 물론 정당 활동까지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로서의 개인만을 사회에 남겼다. 루소는 이미 국가에서 특수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 집단의 존재를 제거하고 각개의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일반의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이성을 가진 개인의 합리적인 사회적 행위를 통해 일반 이익을 실현하는 국가 권력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공공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의 산술적 합으로서의 '수'가 이성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현실적인 보장도 없었다. 이러한 '이성'과 '수'의 긴장은 혁명 시기와 이후 프랑스 정치사에서 '이성'에 의해 표상되는 자유주의와 '수'에 의해 표상되는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라는 '시간'이 나왔어요. 무엇인가가 '변화'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중간집단'이라는 것이 금지되고, '루소'라는 사람의 '일반의지 형성'에 대한 주장까지 등장하며 '이성'을 가진 개인에게만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결국 '이성'으로 표상되는 '자유주의'와 '수'로 표상되는 '민주주의' 간의 갈등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성'이라는 말은 '개인' 혹은 '자유주의'라는 말과, '수'라는 말은 '개인의 합' 혹은 '민주주의'라는 말과 같은 말로 처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이성'과 '수'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면서 읽어봅시다.

우선 **혁명 시기 '수'에 대한 '이성'의 우위가** 드러난 대표적인 예는 '수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선거를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적인 '기능'으로 간주하였다. **선거권의 제한**은 공적인 결정을 합리화하고 민주주의라는 '수'가 갖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들에게 **선거**는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를 해석하고 일반 이익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행위였다.

먼저 '혁명 시기'에는 '이성'이 '수'에게 우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둘의 갈등을 화제로 잡았는데, 처음에는 '이성'이 이기고 있는데요. 이 우위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자유주의자들은 선거를 '기능'으로 간주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행위이므로 '선거 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네요. 개인들의 합인 '수'에는 '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중요한 행위를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이성'이 '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던 시기였네요. 계속해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이 양상이 조금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혁명이 급진화되면서 '수'로 표상되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 등장하였다. 외국과의 혁명 전쟁이 시작되면서 조국의 위기가 선언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상퀼로트들도 국민방위대에 들어갔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법을 거부하고 주권을 직접 행사하기를 원했다.

‘혁명’이 급진화되면서, ‘수’의 약진이 시작됩니다. ‘상퀼로트’와 같은 어려운 말 자체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정의해주지 않으니, 이 개념이 무엇과 같은 말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성’과 ‘수’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는가였어요. 이 맥락에서 읽어보니, 결국 권력을 잡아 가고 있는 ‘상퀼로트’라는 사람들은 ‘이성’에게 승리한 ‘수’를 대표하는 계층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진술을 이용한 정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중대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퀼로트들의 힘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을 ‘덕성’의 이름으로 제한하였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공화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민이 공격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덕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화국의 제도 안에서만 인민의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한정하였다. **덕성**이란 ‘조국과 법에 대한 사랑’이며, 개인적 이익을 일반 이익에 종속시키는 숭고한 자기 희생이었다. 덕성에 대한 강조는 민주주의의 제한과 대표의 절대화 — 대표와 국민의 일치를 통한 대표의 절대 권력 — 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수’들에 해당하는 ‘상퀼로트’들의 힘을 얻어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덕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인데, 대충 보니 공포정치를 펼친 무서운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덕성’을 통해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 즉 ‘수’들의 정치적 실천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공화국의 제도 안’에서만 인민, 즉 ‘수’들의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한정된 것이 그 제한의 내용이에요! 이 해설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끄덕거렸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수’, ‘제한=정치적 실천의 범위 한정’ 등으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잡으며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용한 ‘덕성’이라는 개념은 저렇게 ‘조국’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강조는 상퀼로트 같은 ‘수’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수’의 싸움에서 ‘수’가 우위를 점했지만, ‘덕성’의 이름으로 그 위세가 높이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큰 흐름은 꼭 붙잡은 채로 계속 읽어봅시다.

1789년 이후 **19세기 동안** ‘이성’, ‘수’ 그리고 ‘덕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의 위협에 시달렸다. 중간집단의 부재를 그 주요 원인으로 들었던 **토크빌**이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는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중앙집권화에 기반한 거대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이성’과 ‘덕성’이 약화되어 전제정으로 귀결되었다. 민주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귀족정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토크빌**은 귀족정 시대 중간집단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였다. 혁명과 함께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개인들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국가는 그 권력을 제어할 견제 세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크빌**은 민주주의 시대 중간집단이 정치적 자유가 실현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19세기’는 이런 ‘이성’, ‘수’, ‘덕성’ 사이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때 등장한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이런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간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즉 ‘수’는 결국 ‘이성’과 ‘덕성’의 약화로 인해 전제정(로베스피에르가 바로 떠올라야 해요!)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중간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간집단이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필요하다고 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계속 생각하셔야 해요!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중간집단’이 제시되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종결지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제 3 공화국**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서 중간집단을 다시 허용하였다. **뒤르캥**은 분업이 급속하게 진행된 당시 사회에서 직업적 도덕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직업 집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후 백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중간집단**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또한 19세기 말 정착되기 시작한 정당 체제는 새로운 엘리트 층원 구조이자 여론의 형성자로서 자리 매김된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드러내는 **정당 체제**는 시민과 국가권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방식이 되었다.

결국 이를 위해, ‘이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와 ‘수’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프랑스 제 3 공화국은 ‘중간집단’을 허용했다고 해요. ‘중간집단’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이제 사회에 필요했었으니까요! ‘뒤르캥’의 ‘직업 집단’이라는 것이 그 예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쉽게 체크할 수 있겠죠?

또한 이 맥락에서 ‘정당 체제’가 등장했는데, 이 정당 체제 역시 ‘이성’을 갖춘 엘리트들의 집단이지만 ‘수’들의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아주 적절한 형태의 ‘중간집단’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정당 체제’에 대해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수’와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지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을 것을 요구하는 지문이었습시다. 빠르게 문제 풀어도도록 합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0.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4%	86%	3%	3%	4%

① ‘루소’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체크해봤다면, 지문에 그대로 이 말이 적혀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주장은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② ‘혁명 초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의제, 즉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행위는 ‘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가 갖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대의제’와 ‘선거’가 같은 말인 것 정도는 어휘의 차원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상퀼로트! 임팩트가 강해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들은 거의 ‘수’와 같은 말로 쓰였고, 혁명이 급진화된 시기에 등장한 것도 맞습니다.

④ ‘로베스피에르’의 주장을 묻고 있네요. 역시 ‘덕성’을 제시하면서, 공화국의 제도 내에서만 인민의 정치적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⑤ ‘뒤르캥’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지울 수 있죠?

11.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22%	12%	45%	13%	8%

① 이 지문의 전반적인 흐름 그 자체네요. 나아가 이 선지가 가리키는 것이 결국 ‘정당 체제’와 같은 ‘중간집단’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트라는 ‘이성’들이 ‘수’의 ‘민주주의’를 통제하고, 민주주의 시대의 다양한 ‘중간집단’들이 ‘수’들에게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기회를 주면서 프랑스 제 3 공화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된 것이죠. 사실 수능 수준을 뛰어 넘는 추론을 요구하는 선지로 볼 수도 있어서, 바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토크발’의 주장에 그대로 나오죠? ‘사람의 주장’을 체크해야 한다는 태도만 갖춰져 있었으면 바로 지울 수 있어요.

③ ‘수’가 ‘덕성’을 갖춘다는 건 ‘중간집단’ 덕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성’을 갖추게 된다고요? 애초에 ‘수’는 ‘이성’이 결여된 개념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정당 체제 하의 엘리트와 같은 ‘이성’이 적절히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 지문의 흐름이에요!

나아가 ‘대표 없이’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 ‘상퀼로트’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이성’은커녕 ‘덕성’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었죠?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잡기를 요구하는 선지였어요.

④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이성’이,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에 의해 ‘덕성’이 ‘수’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죠? 역시 화제의 흐름을 묻는 문제네요.

⑤ ‘로베스피에르’가 한 일을 체크했다면, 이 선지가 ‘로베스피에르’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13.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7%	9%	12%	62%	10%

- ‘토크발’의 중간집단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의부터 생각해야겠네요. ‘정치적 자유가 실현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집단’입니다. 이게 아닌 걸 찾아봅시다.

① 교육 정책이라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견제’를 하는 단체! 괜찮죠?

② 정부라는 ‘권력’에 압력! 네 괜찮습니다.

③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④ 담당 공무원이요? ‘권력’에 대해 견제를 해야 하는데, ‘권력’을 이루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네요.

⑤ ‘권력’에 대한 비판!

5주차 [13~17]

2009LEET [5~7] (변형) 사회 '합의의 구속력' ☆☆

오늘날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될 뿐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합의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비교적 최근에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대한 지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가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력'이 있으니 '소송을 통한 이행 강제'가 가능하다고 납득할 수 있겠죠? 또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도 맞아떨어지니,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비교적 최근에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당연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 지문은 당연하게도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인식이 변화한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는 지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측해두고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뿐 아니라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곧 소송을 통해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마의 법률가들은, 만일 당사자가 어떤 노예를 해방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 놓고도 그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있다면 받은 돈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그 노예를 해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협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우리의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와 중세 영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앞서 말한 '합의의 구속력'이라는 개념이 아주 낯선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도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구분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약간은 어려운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출제자님은 사례를 들어 주고 계시네요. 이 사례를 통해,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예 해방을 대가로 돈을 받아 놓고 노예를 해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우리가 지금 가진 상식으로는, 소송을 통해 노예를 해방하라는 결론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시대의 법률가들은 받은 돈을 되돌려 주면 됐지, 굳이 노

상성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예를 해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네요. 여기서 '받은 돈을 되돌려 주는' 행위가 곧 '손해를 구제'하는 것이고, '노예를 해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곧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원리 연결'은 이렇게 일대일 대응의 느낌으로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손해 구제'와 '이행 강제'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는 손해를 구제해주면 충분한 것이지, 굳이 노예 해방을 해 주어서 합의에 '구속'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은 분쟁에 대한 해결책 제시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여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를 통해 지금과 같은 인식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자,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6세기 중반까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영국의 물가가 16세기 후반 갑자기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 시점은 영국의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도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행할 시점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같은 가격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했다면 비싼 가격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므로 가격 차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시간이 흐르자,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소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 그렇다면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일까요?

16세기 후반 영국의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영국의 판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된 상황'과의 재진술일 겁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현상이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고, 이로 인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가 상승'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케 했는지 궁금해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사례가 나오고 있네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목적물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기존 로마의 법률가들 생각처럼 매수인이 낸 돈을 돌려 주는 것만으론, 즉 '손해를 구제'해주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의 손해를 모두 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당시의 매수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물가가 올라버려서 예전의 그 가격으로는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매도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너무나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이 합의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발생한 것이죠! 이렇게 '합의의 구속력'이라는 화제에 맞춰 지문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합의만으로는 소권(訴權)이 생기지 않는다'는 로마법 이래의 원칙을 파기하려면 법리적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의 세속법 학자들은 그러한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다수의 영국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에 반대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형식법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뛰어넘는 데 필요한 힘은 교회로부터 나왔다. 중세 교회의 윤리 신학자들은 오직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의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질법적 사고방식은 이미 13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훈령 속에 '합의는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규정되었고, 결국 16세기 후반 영국 세속법의 변화에도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인 여건 변화만으로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형식의 옷을~'에 해당하는 로마법 이래의 원칙을 파기하려면 '법리적 정당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로마법 이래의 원칙'은 곧 '합의는 소송을 통해 구속될 수 없다'는 내용이라는 건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추상적인 내용은 언제나 '재진술'로 받아들이며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아무튼, 경제적인 내용 말고 '법리적 정당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교회'가 그 정당화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중세 교회의 신학자들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자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은 '합의는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규정되는 방향으로 나아 갔습니다.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바로 '해야 할 것'에 해당하고, 준수하지 않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법리적 정당화'까지 이루어지면서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오늘날의 생각이 만들어졌네요.

생각 심화
조금 더 사후적으로 이해해보면,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3문단의 '물가 상승' 이야기도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물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날의 인식까지 변화하기 위해서는,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형적인 전제'가 개입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조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리적 정당화'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규정을 바탕으로 법리적 '정당화'가 되었으니,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선형적인 전제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진 거죠! 지문이 아주 논리적으로 짜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을 지지하는 판사들은 여전히 형식의 옷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합의의 구속력이 논란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16세기 후반 이후 약 200년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 제도가 점차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19세기의 법률가들이 인간 중심적인 근대 철학에 기초하여 합의의 구속력의 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세기의 법률가들은 합의의 구속적 성격이 인간의 자율성에서 도출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한 바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패러다임이 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견뎌내야 해요.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인식도 무려 200년 이상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네요. '경제적 여건'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물가 상승'이 지속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글쓴이는 19세기 법률가들의 '근대 철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근대 철학'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인데, 이 지문에서는 '인간의 자율성'을 그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율성'을 발휘해 합의한 것이라면, 거기에 구속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결국 '경제'적인 내용과 '철학'적인 내용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서, 현대의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인식이 완성된 것입니다.

첫 문단에 제시된 화제를 잡고 그에 맞춰 읽어내려갔다면 어렵지 않게 독해할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중간중간 사례-원리 연결도 매끄럽게 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③

- ① 로마 시대의 법률가들은 원칙에 따른 일관성보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중시하였다.
- 로마 시대의 법률가들은 어떤 거창한 선형적 전제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고려를 더 중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장과 그 근거에 주목하면서 읽어내는 태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 ②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손해의 구제 수단으로 여겼다.
- 16세기의 영국 판사들은 '물가 상승'이라는 사회 변화를 기반으로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송'이라는 것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의 구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FAQ
Q : '16세기 영국 판사들이 '중세 영국의 판사들'과 같은 말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식인 것 같기는 한데...
A :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상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문의 내용에 근거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문단 첫 문장을 보시면, '로마의 법률가'와 '중세 영국의 판사'로 카테고리 나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문단에서 '로마의 법률가' 이야기를 했고, 3문단에서 '영국 판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때의 영국 판사는 '중세의 사람들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나눠 준 카테고리 순서대로 정보가 제시되는 형태는 평가원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나 보인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합시다.

③ 16세기 후반의 영국 판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 중세의 영국 판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면 이 지문의 화제가 무의미하지요? 이 지문은 저런 생각으로의 '변화'를 다룬 지문이니깐요. 나아가 저 시기의 인식 변화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는 무려 2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으니, 여러모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선지입니다.

④ 중세의 윤리 신학자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합의 준수 의무를 인정하였다.

- 중세의 윤리 신학자들은 '양심의 법정'이라는 '윤리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하였습니다.

⑤ 19세기의 법률가들은 근대 철학이 합의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 마지막 문단에서 충분히 설명된 내용이지요? '자율성'이 핵심입니다!

14. 윗글의 문맥에 따라 때 ㉠, ㉡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합의만으로는 소권(訴權)이 생기지 않는다'

㉡ '합의는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한다'

- ㉠은 아직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던 원칙이었고, ㉡은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교회의 조항입니다. 명확한 비교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니, 조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네요.

① ㉠은 합의의 형식에 따라 그것의 구속력 여부가 결정됨을 뜻한다.

-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합의에는 '구속성'을 가진 '소권' 부여가 어렵다면, '형식의 옷'을 입은 합의에는 '소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반대 추론이 가능하겠네요.

② ㉡은 합의의 불이행만으로는 소권이 부여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1번 선지와 그냥 똑같은 선지죠? 여기서 '소권 부여=구속력 인정'으로 재진술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간 중심적 사고가 확산된 결과를 보여 준다.

- 일단 ㉡은 '종교'와 관련된 내용일 뿐 아니라, '인간 중심적 사고'는 곧 마지막 문단의 '근대 철학'을 의미하죠? 지문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보를 조합해서 틀린 선지로 만든 모습입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은 합의의 형식에 따라 그것의 구속력 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 1번, 2번 선지와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비교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았어야 합니다!

⑤ ㉠과 ㉡은 합의의 구속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 둘의 공통 범주를 이야기하는 선지네요. 인정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둘 다 '합의의 구속력'이라는 화제 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16. ㉠의 입장에서 '합의의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③

- 핵심은 '자율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걸 고르면 돼요. 정말 쉬운 문제네요.

<보 기>

㉠.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테블릿 PC 구매에 대해 중고 거래상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젊은 기업가가 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른 기업과 거래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여부에 따른 손해를 충실히 고려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17. 문맥상 ㉠과 비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준수(遵守)되지
② 실행(實行)되지
③ 이행(履行)되지
④ 수반(隨伴)되지
⑤ 엄수(嚴守)되지